

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-305호

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 
규정변경예고

1. 개정이유

‘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-OTC 개편방안’(17.6월)의 후속 조치로 K-OTC 시장이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고,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청약권유불포함 전문투자자 범위 정비(안 제2-2조의3제2항)

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K-OTC PRO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대한 모집·매출 판단 시 적용되는 청약권유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벤처캐피탈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투자자를 추가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자본

시장과, 전화: 02-2100-2643, FAX: 2100-2648, e-mail: kwleefsc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